

1. 학 칙

제정 1993. 9. 4
개정 2010. 9. 1
개정 2012. 9. 1
개정 2014. 3. 1
개정 2014.10. 1
개정 2015. 4. 8
개정 2016. 6. 3
개정 2016. 6.24
개정 2016.11.25
개정 2017. 6.23
개정 2017. 9.13
개정 2018. 2. 3
개정 2018. 5.10
개정 2018. 1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은 법학이론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통해 전문법률분야에 대한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본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두며, 수업은 야간 또는 주말에 실시한다.

제3조(전공 및 정원)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석사학위과정의 전공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학위과정	정원	전공
석사학위과정	126명	경영법무, 공정거래법무, 조세법 지식재산권법무, 형사사법, 글로벌비즈니스법무, 금융법, IT·정보보호법
연구과정	00명	

② 본 대학원 입학정원은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연구과정은 약간명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행정 팀을 둔다.

제5조(전공별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①본 대학원에 제3조에 규정된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단,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개별학생의 연구 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둔다.

③본 대학원은 제39조에서 정한 공개강좌의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개강좌의 운영을 전담할 자를 특임교수 또는 겸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 구성)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 대학원 학과장으로 구성된 대학원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퇴학, 학위수여 취소와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과정,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 또는 대학원에 관한 제 규칙, 제 예규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의2(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4. 학위수여 취소 사항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의결방법)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임기) 본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3장 입학

제10조(입학 시기)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입학전형회수)본 대학원은 매학기 신입생을 선발한다.

제12조(입학자격)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하여 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삭제>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3조(지원 절차)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와 입학 전형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입학전형)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할 지원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행한다.

제15조(입학허가) ①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의 허가는 제14조에서 정한 입학전형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행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학할 수 없다.

1. 입학과 관련하여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자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3. 제12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거나 학사학위가 취소된 자

제16조(입학정원) ①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정원은 126명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소지자
4. 연구과정에 입학한 연구생

제17조(편입학) ①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따르며, 시기와 절차는 입학의 경우에 준한다.

제4장 등록 및 학적

제18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시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른 등록은 철회할 수 없다.

제19조(등록학생의 권한) 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등록금 대체 및 반환)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징계, 제적 등 학생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에는 관계법령 및 본교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반환한다.

제21조(휴학) ① 질병, 입대, 임신·출산, 육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다음 각호의 기간은 제2항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
2. 본인의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 및 부 또는 모가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1년

제22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학사포탈 사이트에서 복학을 신청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제적)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1. <삭제>
2. 제21조에 의한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3. 제18조에서 정한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
4. <삭제>
5. 제26조에서 정한 재학연한이 만료한 학생
6. 제34조의2에 의하여 학위수여가 취소된 학생
7. 제41조에서 규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여 제적 결정을 받은 학생
8.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

제24조(자퇴)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재입학)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 제5호, 제6호, 제7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5장 수업 및 학점

제26조(수업 및 재학연한)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년 6개월(5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5년(10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1년(2학기)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수과목) ① 모든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공통과목, 선택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타 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연세대학교 및 타 대학교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중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연세대학교에서 이수한 경우는 본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타 대학교에서 이수한 경우는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전 교육과정을 통하여 6학점까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법무대학원 형사사법전공과 행정대학원 사법행정전공 및 경찰행정전공간의 학점교류에 관해서는 별도 규칙에 따른다.

④ 유사대체 과목 인정학점으로 학기를 단축할 수 없다.

제28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며, 그 중 전공과목은 별도의 세칙에 규정한 전공필수 전 과목을 포함하여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과목 중에서 임의로 6과목(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석사과정 학생은 5학기에 논문·연구보고서작성 또는 교과목 이수로 학점이수를 선택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학기당 학점) 학생은 학기당 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30조(학점인정) ① 학생이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C- 이상의 학점을 취득할 경우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생이 강의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F 학점을 부여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사망
2. 예비군 훈련 참석 등 공적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우
3.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
4. 결석사유서를 첨부한 재직기관의 공무로 인한 결석(단 2회에 한하여 인정)
5. 기타 담당교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편입학자 학점인정) 편입학자의 기득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은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6장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32조(종합시험)① 3학기 동안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18학점 취득 및 취득학점의 총 평량 평균이 3.00이상이고 3학기 동안에 개설된 종합시험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5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제33조(학위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학위수여)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 심의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제34조의 2(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35조(연구과정 입학자격)본 대학원 연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36조(연구생) ①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심사와 전형고사에 합격될 경우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연구과목에 한하여 대학원 수업에 출석할 수 있다.

제37조(연구연한) 연구과정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38조(실적증명) 본 대학원 연구과정에 1년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9조(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8장 상벌

제40조(장학금의 지급) ① 대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원우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를 통해 학생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
3. 기타 대학원 위원회에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1조(징계) ① 대학원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생지도에 불응하는 등 면학분위기를 해치거나 연세대학교 및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학생
 2. 학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저서 또는 논문 등을 표절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 등을 한 학생
 3. 학생의 본분에 위배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대학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 대학원 구성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있는 행위를 한 학생
 5.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 ②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로 한다.
- ④ 징계는 대학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⑤ 학생의 상벌 및 불복절차와 관하여는 연세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

제9장 보칙

제42조(학위수여규정)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세칙 및 내규) 본 학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 및 내규로 정한다.

제44조(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학칙 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이 개정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학칙 제3조의 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학칙 제27조의 개정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3조, 제4조, 제6조, 제16조, 제22조, 제27조 제2항, 제29조, 제33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 전공 명 변경은 2010년 3월 1일 이전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제7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32조 제2항 제3항, 제33조)은 2013년 2학기 입학 학생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1학기 이전 입학 학생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개정된 학칙을 선택하거나 또는 종합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연구보고서를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

제8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29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25조, 제32조 제2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29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개정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7조, 제7조의2, 제34조의2)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개정일) 학칙 제1장 3조의 개정은 2017년 1학기부터 시행하고, 학칙 제2장 5조, 제4장 21조의 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5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제40조)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1조,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3항, 제41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1장 제3조)는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학생들은 '경제법무' 전공 명칭을 유지한다.

제16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4장 제23조 제8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5장 제27조 제2항, 제3항, 제4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1장 제3조 제1항)은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19조(개정일) 본 개정학칙(제4장 제25조)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학칙 시행세칙

제정 1994. 2. 1
 개정 2010. 3. 1
 개정 2012. 9. 1
 개정 2014. 3. 1
 개정 2014. 10. 1
 개정 2015. 4. 8
 개정 2016. 6. 3
 개정 2016. 6.24
 개정 2016.11.25
 개정 2017. 6.23
 개정 2017. 9.13
 개정 2017.11.20
 개정 2018. 5.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법무대학원 학칙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전항의 학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2(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 ①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교과목은 전공과목, 선택과목, 공통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전공별 교과목은 대학원 위원회가 지정한다.

③ 전공과목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전공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전공 명	필수과목
지식재산권법무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경영법무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회사법, 금융거래법, 경영학특강
형사사법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 형법기초1
공정거래법무	소비자보호법개론, 공정거래경제학,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공정거래법개론
조세법 (8과목중 선택적 필수 3과목)	법인세법,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상속증여세법, 국제조세법, 회계학특강, 법률마케팅과 법률회사조직론, 금융과 세론, 부동산 조세 전략론
글로벌비즈니스법무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 국제무역실무
금융법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금융규제법, 자본시장법, 금융회계특강
IT·정보보호법 (3과목중 선택적 필수 2과목)	사이버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제2장 이수학점 및 수강신청

제3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그 중 전공과목은 다음의 전공필수 전 과목을 포함하여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단, 조세법 전공자 중 논문을 쓰지 않는 학생의 경우 최저 20학점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과목 중에서 임의로 6과목(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석사과정 학생은 5학기에 논문·연구보고서작성 또는 교과목 이수로 학점이수를 선택할 수 있다.

가. 논문작성 선택 시 : 졸업논문 6학점

나. 연구보고서작성 선택 시 : 연구보고서 4학점

다. 교과목이수 선택 시 : 교과목 이수

제4조(학기당 학점) 학생이 매학기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최저 2학점, 최고 8학점으로 하며 직전 3개 학기를 합산하여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기초과자의 경우에는 최저 학점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전 학기에 F학점을 받은 경우 1과목에 한하여 추가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청강제도) 학생은 매학기 학점 없이 2과목까지 청강할 수 있으며, 성적평가는 “이수필”(Pass:P)과 “이수미필”(Nonpass:NP)로 평가하여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6조(학점인정)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마치고 석사과정에 입학했을 때에는 이미 이수한 교과과목 중 80학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고 6학점을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학점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단축되지는 아니 한다.

제7조(유급) 매학기 소정의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급을 한다.

제8조(수강신청)① 학생은 수강신청기간에 이수할 교과과목을 선택하여 학사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를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제적을 면할 수 있다.

제9조(수강과목변경) ① 이미 신청한 교과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간표변경, 과목의 폐강,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 초 일정기간 내에 학사포탈 서비스에서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일정기간 외에 임의로 변경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강과목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수업일수 2/3일 이내)내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주임교수, 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졸업논문 및 연구보고서작성 과목은 논문예비심사 접수마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 철회후의 잔여 신청과목의 최저학점 수는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④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 (Withdraw)로 기재한다.

제11조(재수강제도) ① 성적평가가 “F”인 과목 또는 등급의 상향을 원하는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② 성적평가가 F로 나온 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재수강하여야 하고, 선택과목인 경우에는 재수강할 수 있다.

③ 학적부에는 첫 번 수강 때의 성적평가와 함께 재수강한 성적평가가 기재된다.

④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는 첫 번 수강 때의 성적평가에 재수강임을 밝히는 표시를 한다.

⑤ 재수강한 동일 과목의 첫 번 수강 때의 F는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량 평균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제12조(폐강) 대학원장은 이미 개설된 교과과목 중 수강신청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그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제3장 학업성적 및 출석

제13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시험은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학업성적) 매 학기의 정기시험에 있어서 수강과목 성적이 C- 이상의 학점만을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과정수료 및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전 이수과목이 평균 B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등급	평점	설명
A+	4.3	우수
A0	4.0	
A-	3.7	
B+	3.3	우량

B0	3.0	양호
B-	2.7	
C+	2.3	
C0	2.0	
C-	1.7	
F	0	불량
W	0	Withdraw
P/NP	0	청강·연구(합격/불합격)

제15조(성적등급·평점)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의 원칙에 준하여 한다.
 제16조(출석일수)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1/3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과 상관없이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시험 불응신고 및 추가시험

제17조(시험불응신고) 정기시험을 사고로 인하여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불응사유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불응사유서) 시험불응사유서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병으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입대 및 병무소집 관계로 응시하지 못한 자는 소집영장 또는 입대 확인서 사본.
3. 직계가족 사망으로 불응한 자는 사망진단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의 사유로 불응한 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

제19조(추가시험) 불응사유서를 제출한 자 중,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5장 전공변경

제20조(전공변경) 전공분야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 소정의 전공분야 변경원을 행정 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전공변경이라 함은 동일학위과정 내에서의 전공 간 이동을 뜻한다.

제21조(변경원)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공 변경원
2. 사유서
3. 성적표
4. 기타 증빙서류

제22조(변경허가) 전공분야의 변경허가는 1학기를 수료한 자에만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 전공주임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2학기 수료 후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변경회수) 전공분야의 변경은 1회에 한한다.

제24조(변경 전 이수학점) 변경 전 전공분야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의 학점은 변경 후 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5조(과정변경) 과정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6장 편입학자의 학기 및 학점인정

제26조(학기·학점인정) ① 학칙 제31조에 의거하여 편입학한 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입학자의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은 1학

기 단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학점인정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에서 개설된 강좌와 유사한 과목으로 취득한지 5년 이내의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제출서류) 전조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학신청서
2. 편입 전 재학한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3. 기타 증빙서류

제7장 휴학, 퇴학, 제적, 복학 및 재입학

제28조(일반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포탈 서비스에서 휴학을 신청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입대휴학 등) 군 입대 또는 임신, 출산 및 육아(8세 이하 자녀, 취학 중 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입대휴학 및 출산(육아)휴학은 휴학횟수 및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1조(휴학신청) ① 미등록 휴학신청서의 제출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친 학생의 학기 중 휴학신청서의 제출은 학기말 시험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등록 후 휴학 시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다.

제32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을 신청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제적) 원장은 학칙 제23조의 사유가 인정되는 학생에 대한 제적을 결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34조(자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서에 자퇴이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재입학)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신청서에 재입학이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학기·등록금) ① 제31조의 등록을 마친 학생의 등록금은 휴학 후 복학할 때 그 기간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중간시험 이후의 입대 휴학한 학생의 당해학기는 인정되며, 중간시험 성적이 그 학기의 성적으로 본다.

제8장 본교 및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점인정

제37조(본교 및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대학원장은 최초 본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본교 및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대학원장은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거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학점을 승인할 수 있다.

③ 학생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수는 학기당 2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간에 적용되는 규칙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제3조(개정일) 이 개정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세칙 제20조의 개정 및 추가 삽입된 제8장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3조 제1항, 제4조, 제9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4조, 제20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5조 제3항, 제8장, 제37조 제1항)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1항의 전공변경은 2010년 3월 1일 이전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제7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4조, 제37조 제3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4조)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29조, 제30조)은 즉시 시행한다.

제10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29조, 제30조)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3조)은 2017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조세법 필수 과목의 경우만 2017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3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33조, 제35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2장 제3조)는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학생들은 '경제법무' 전공 명칭을 유지한다.

제14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1장 제2조의2, 제2장 제3조)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3. 종합시험 시행세칙

제정 1994. 4. 1

개정 2010. 3.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4. 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32조에 의거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국어시험 <폐지>

제3장 종합시험

제10조(응시자격) ① <폐지>

② 3학기동안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18학점 취득 및 취득학점의 총 평량 평균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③ 3학기 동안에 개설된 종합시험 해당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시기) 종합시험은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

제12조(응시절차)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행정 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출제범위)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15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부원장이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본다.

제17조(재 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최초 응시학기부터 4학기 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8조(논문제출 및 졸업 요건)

①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5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학점이수로 졸업하고자 하는 원생은 졸업학기까지 종합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졸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12조 제1항)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18조)은 2013년 2학기 입학 학생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1학기 이전 입학 학생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개정세칙을 선택하거나 또는 종합시험성과 관계없이 연구보고서를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

제5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18조 제1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석사학위논문에 관한 세칙

제정 1994. 4. 1

개정 2010. 3.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4. 8

개정 2017. 6.23

개정 2018. 8.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33조의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폐지>
 2.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5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3. 연구계획서를 학위논문 제출 전학기(4학기)에 승인받아 논문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4.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본 심사를 완료 예정인 자. (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논문 제출 시 필요한 취득학점(24학점)의 총 평량 평균이 3.00 이상인 자
- 제3조(학위논문)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 제3조의2(연구보고서)
- <삭제>
- 제4조(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강좌의 이수)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작성법 및 연구윤리 강좌를 이수하여야 한다. 논문작성법 강좌는 졸업논문 과목 신청자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강좌는 P/NP로 평가한다.
- 제4조의2(연구보고서) ① 종합시험에 응시한 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구보고서작성법 강좌를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보고서작성법 강좌는 연구보고서작성 과목 신청자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 ③ 전 항의 강좌는 P/NP로 평가한다.
- ④ 연구보고서는 본 대학원 전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성하며, 지도한 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 ⑤ 연구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장 논문지도 및 심사

- 제5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본 대학교의 관련분야 전임교수가 지도교수가 된다.
- 제6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 전학기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연구계획서에 희망하는 논문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지도교수결정) ① 부원장은 졸업논문과목을 신청한 학생에 대하여 제6조 제2항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 ② 대학원장은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지도교수를 확정하고 논문지도를 위촉한다.
- 제8조(논문연구계획서) <삭제>
- 제9조(논문제목변경) 전조의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논문제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 제목 변경원”을 행정 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배정시기)부원장은 졸업논문과목신청자에 대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정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 선정방법 및 기능)대학원장은 제10조에 의한 제청이 있는 경우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위촉한다.

제12조(심사위원회구성)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인 경우 3인으로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③ 심사위원은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장)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3장 학위논문제출

제14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판종 : 4:6배판(18.5cm * 25.5cm)

2. 지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3. 인쇄방식 : 단면 혹은 양면 인쇄하되 논문은 마스터, 오프셋 인쇄로 한다.

4. 표지색깔 : 진한 감(紺)색

5. 제복식 : 클로스 양장

6. 표지인쇄방식 : 다음[도해 1]에 따르되, 명조체 2호 활자로
금색인쇄

7. 속표지의 양식 : [도해 2]에 따른다.

8. 제출서 양식 : [도해 3]에 따른다.

9. 인준서 양식 : [도해 4]에 따른다.

10. 논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

가. 속표지

나. 제출서

다. 인준서

라.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마. 국문요약(2페이지 이내)

바. 본 문

사. 참고서적 목록

아.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자. 영문요약(2페이지 내외, 독문, 불문요약도 가능)

제15조(논문편제) 논문편제 및 서술방식은 연세대학교 논문작성법 편찬위원회편, 「새논문작성법」(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에 따른다.

제16조(논문 심사료) <폐지>

제4장 학위논문 예비심사

제17조(심사논문제출) ① 학위논문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3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 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일 이후에 행정 팀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학기에 심사 한다.

제18조(심사방법)①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 한다.

② 전공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각 전공별로 공개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소정기일 내에 예비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심사판정)① 논문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 타당성, 취급방법의 타당성, 연구 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②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논문의 본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③ 판정은 가, 부로 평가하여 예심의 통과는 3인중 1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논문인쇄) 논문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제출자는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한 후 지도교수로부터 인쇄회부 승인을 받아 논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제5장 학위논문 본심사

제21조(본심사 제출부수) 논문제출자는 인쇄된 논문 3부를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 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논문은 다음 학기로 심사를 연기한다.

제22조(본심사) ①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행한다.

② 논문을 제출한 학생이 전항에서 정한 시간에 심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동의하에 추후에 심사할 수 있으나,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④ 본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⑤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논문평가방법)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본심사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4조(구두시험)<삭제>

제25조(학위논문의 재심사)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차후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폐지>

제26조(학위논문 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 기일 내에 온라인 등록 및 학술정보원

에 원본1부를 포함한 8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개정일) 본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6조, 제8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항, 제21조, 제26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일) 개정세칙(제2조, 제3조의2)은 2013년 2학기 입학 학생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1학기 이전 입학 학생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개정세칙을 선택하거나 또는 종합시험성적과 관계없이 연구보고서를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

제6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2조 제3항,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1장 제4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석사학위수여에 관한 세칙

제정 1994. 4. 1

개정 2010. 3.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4. 8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제34조에 관한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수여자격)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1.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학칙 시행세칙에 규정한 전공필수 전 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 14학점 이상 이수)

2. 이수학점(30학점)의 총 평량 평균이 3.00이상인 자.

3. <폐지>

4.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5학기이상 정규등록한자.

6. 논문 선택자의 경우 논문 본심사에 합격한자.

6-1.연구보고서선택자의 경우 지도한 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7. 입학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자를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4조(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법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5조(보고) 총장은 학위수여자를 교육부에 보고한다.

제6조(학위수여시기 및 회수) 학위수여의 시기는 년 2회로 한다.

제7조(학위증서) 석사학위 수여는 아래의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5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2조 제6-1호)은 2013년 2학기 입학 학생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년 1학기 이전 입학 학생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개정세칙을 선택하거나 또는 종합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연구보고서를 선택하여 졸업할 수 있다.

6. 입학전형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1994. 4. 1

개정 2010. 3. 1

개정 2015. 4. 8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3장에 규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구 대학 령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자.
3. 위 1·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출신대학의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선택 지원 할 수 있음

제3조(지원구비서류)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본 대학원 소정양식), 사진 3매
2. 대학졸업증명서(학사학위등록번호 기재)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3. 대학성적증명서 1통
4. 학업계획서 1부
5. 경력증명서 각 1통(해당자)
6.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
7. 국가고시 합격증 1통(해당자)
8.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1통
9. 소정의 수험료

제4조(전형방법)입학전형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출제방식) <폐지>

제6조(배점 및 합격기준) <폐지>

제7조(합격사정) ① 각 출제위원이 지원자의 시험결과를 검토·날인하여 행정 팀에 제출한다.

② 부원장이 날인한 지원자의 시험결과를 대학원장이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는 지원자의 합격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제8조(신입생등록) 합격이 확정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하게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2조, 제7조 제1항)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7. 경영정책법무 최고위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1994. 4. 1

개정 2010. 3. 1

개정 2015. 4. 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39조에 의하여 설치된 경영정책법무 최고위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과정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경영정책법무 최고위과정이라 한다.

제3조(운영) ① 이 과정은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과는 별도로 단기 공개강좌로 운영한다.

② 이 과정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수강자들을 위해 사이버 강의를 통하여 진행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칙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위원과 해당주임교수로 구성된다.

제5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강자 입학전형 및 수료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3. 학사운영 및 표창에 관한 사항
4. 담당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의결방법 및 임기) 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임기는 법무대학원 학칙 제8조와 제9조를 준용한다.

제3장 모집 및 전형방법

제7조(모집인원) 이 과정의 모집인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8조(입학자격) 이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고급공무원, 각 기업체의 고위정책결정자, 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의 간부, 교육책임자, 국회의원, 군 장성, 정당의 간부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9조(구비서류) 이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현직위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전형방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필요시 면접전형을 추가한다.

제4장 수강기간 및 등록

제11조(수강기간) 매회 수강기간은 2학기 운영하되 매 학기당 4개월(주 1일, 2시간)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개강) 매년 3월에 개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수강등록) 수강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일단 납입

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장 사이버 강의의 수업 및 학업평가

제14조(수업) 이 과정의 수업 중 사이버 강의는 법무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된다.

제15조(학업평가)

① 사이버 강의의 수강자는 본 과정의 수료를 위해 수업내용의70% 이상을 수강하고 소정의 리포트를 제출하여 “이수 필” (Pass:P) 로 평가받아야 한다.

② 리포트의 평점은 “이수 필” (Pass:P)과 “이수미필” (Nonpass: NP)로 평가한다.

제6장 수료 및 표창

제16조 (수료증서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제17조 (표창) 재학 기간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이 과정 또는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개정일) 본 개정세칙(제1조, 제2조, 제4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